두메 동아리 회칙

제정[]

전문

본 동아리는 1985년 민요 동아리로 창립되어 1987년 민중가요 동아리, 2012년 밴드 동아리로 전환되었으며,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을 가지며, 동아리 구성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노래를 멈추는 그날까지 두메 라는 이름으로 남을 것을 약속하며 본 동아리 회원의 동의를 거쳐 회칙을 제정한다.

-------------------------------------------------------------------------------------------------------------

**제 1장 동아리**

**제1조 [동아리의 명칭]**

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두메”로 한다.

② 국문 표기와 외래어 표기는 병기하거나 둘 중 하나면 표기하여도 상관없다.

③ 본 동아리의 명칭은 1985년 두메를 창설한 1기 회장단 및 각 연도별 회장단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2조 [회원의 자격]**

① 본 동아리 회원의 자격은 숭실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다른 음악 동아리 혹은 소모임의 회원은 본 동아리의 회원이 될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 회의를 거쳐 본 동아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한 번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후 학적의 변동 및 기타 사항이 있더라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그 권한과 의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 제한은 집행부에서 정한다.

⑤ 학적 변동이 있는 회원의 경우, 사전조사를 통해 두메 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제3조 [동아리의 소재]**

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산하의 처부 또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②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본조 이하 “동아리 방”으로 칭한다.

**제4조 [회칙]**

① 회칙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 및 동아리방에 상시 비치한다.

②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진행한다.

③ 집행부는 회칙 산하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회칙에 위배되는 규칙은 무효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가입]**

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 [회원의 탈퇴]**

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

-------------------------------------------------------------------------------------------------------------

**제 2장 집행부**

**제7조 [집행부]**

① 집행부는 본 동아리의 최고 의결 단체이다.

② 집행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1. 동아리의 모든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기획권
2. 동아리내 모든 금전적 출납을 관리하는 회계권
3. 동아리내 모든 사물을 관리하는 관리권
4. 동아리내 모든 인사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인사권
5. 회칙 산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제정권

③ 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④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되는 회장단을 필수로 두며, 기자재부장, 인사부장, 서기로 구성되는 집행부원으로 구성된다.

⑤ 차기 집행부는 연말 종강총회에서 직전회장단이 선출하며, 이후 차기 집행부가

추가적인 집행부원을 선출 할 수 있다.

⑥ 집행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총회를 통해 직책을 막론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전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는 인수인계를 위해 LT를 거치며, LT 기획은 전년도 집행부의 기획에 따른다.

⑧ 집행부 탈퇴는 모든 집행부원에게 공표하여 알리고 공표 후 7일 이내 해당 업무의 모든 인수인계를 마친다

**제8조 [집행부 회의]**

① 집행부 회의는 본 동아리내 최고 의결 기구이다.

② 집행부 회의는 1인 이상의 회장단과, 1인 이상의 집행부원으로 진행하며,

월 2회 이상 진행한다.

③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이 기록은 서기가 한다.

④ 집행부 회의는 동아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평화롭게 한다.

⑤ 의사결정 간 대립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⑥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시, 그 수가 동률을 이룰 경우, 회장의 최종 의견에 따른다.

**제9조 [집행부의 권한과 의무]**

① 집행부는 본 동아리의 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집행부는 동아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③ 집행부는 동아리 방내 모든 기자재에 대해 유지, 보수의 의무를 가진다.

④ 집행부는 본 동아리내 공적인 문제에 대해 중재, 해결의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회장의 권한과 임무]**

① 회장은 동아리내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모든 의사를 집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의사표시만으로 집행부를 선,해임을 할 수 있으며, 각 부장을 위임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모든 부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회장은 총무의 권한과 임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회장은 회원의 인사관련건에 대해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 [부회장의 권한과 임무]**

①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 자동으로 회장의 임무를 인계 받는다.

② 부회장은 회장과 같이 모든 부장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원의 인사관련건에 대해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해 동아리를 운영한다.

**제12조 [총무의 권한과 임무]**

① 총무는 본 동아리의 모든 금전 출납 업무를 담당한다.

②총무는 집행부의 금전 출납에 대한 모든 기록을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③총무는 금전 출납에 대한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안에 대해 집행을 재결 할 수 있다.

④총무는 정기 총회 시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정기 총회에서 공개한 회계장부는 동아리원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공지한다.

**제13조 [기자재부장의 권한과 임무]**

① 기자재부장은 동아리방 내 모든 기자재를 유지, 보수 해야한다.

② 기자재부장은 동아리방 내 모든 기자재 사용법을 회원들에게 교육한다.

③ 기자재부장은 기자재 구매 및 처분에 대해 회장과 같은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④ 기자재부장은 동아리내 모든 기자재를 관리, 유지보수를 맡는다.

**제14조 [인사부장의 권한과 임무]**

① 인사부장은 회원의 가입 과 탈퇴 및 기타 인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며,

회원의 선발 및 제명에 관해 회장과 같은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② 인사부장은 재학생 명부 관리 및 졸업생 명부 관리한다.

③ 인사부장은 회원의 학생 정보와 활동 여부가 바뀐 모든 상황에 대해 조사 후 수정한다

**제15조 [서기의 권한과 임무]**

① 서기는 집행부의 회의, 총회 시에 논의 및 안건을 기록한다.

② 서기는 기록한 문서를 동아리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③ 서기는 기록한 문서를 해당 년도 임기가 끝날 때 까지 보관한다.

④ 서기는 동아리내 모든 문서에 대해, 열람 및 요구가 가능하다.

**제16조 [예산책정 및 회비]**

① 집행부는 동아리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책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책정은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② 예산책정은 해당 년도의 모든 회원의 회비, 전년도의 이월금, 기타 수익금등 동아리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해 산정한다.

③ 회비의 금액과 납입기간, 납입 방식은 집행부에서 정하며, 예산 책정과, 회비의 금액은 반드시

정기총회에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는 동아리원에게 회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건의 받을 수 있다.

⑤ 회원은 정해진 금액을 납입기간 내 납입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무에게 고지해야 한다.

⑥ 지정된 납입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본 동아리내 모든 행사 참여와 기자재 사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제 3장 회원**

**제17조 [회원의 권한과 임무]**

① 회원은 집행부를 도와 동아리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다.

② 회원은 확정된 집행부의 의결을 따라야할 의무를 가진다.

③ 회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1. 집행부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표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
2. 자유롭게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건의권
3. 집행부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4. 집행부의 탄핵을 진행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
5. 본 동아리내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권

**제18조 [회원의 이의제기]**

①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대해, 회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집행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결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제기 사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결정의 효력은 중지된다.

④ 같은 사안에 대한 재결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⑤ 재결의 신청은 서면과 구두의 방식을 막론한다. 재결 내용의 고지도 동일하다.

⑥ 이의제기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정기총회에서 다룬다.

⑦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정기총회 전까지 의사결정의 효력이 중지된다.

**제19조 [회원의 집행부 의사결정 참여]**

① 본 동아리 회원은 집행부의 의사결정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집행부의 의사결정 회의에 참여하려면 집행부원에게 미리 참석의사를 밝히고,

집행부는 협의 후 해당 동아리 회원의 참석 가능 여부를 밝힌다.

**제20조 [회원의 제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제명한다.

1. 본 동아리 회원을 상대로 형사사건에 소추 된 자.

2. 동아리 및 동아리 회원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절취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부회의를 통하여 제명한다.

1. 본 동아리 소속의 회원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활동이 저조한 자.

2. 동아리의 화합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긴급하게 동아리 회원과 격리가 필요한 자.

3. 동아리 및 동아리 구성원의 기물을 과실로 파손하고 그 사실을 은닉하려고 한 자.

③ 제 ①항 및 제 ②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로 제명이 필요한 자는 임시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④ 제 ①항의 1호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등의 판결을 받은 자는 제명을 취소한다.

**제21조 [회원의 개인 악기 동아리 방 비치]**

① 회원은 개인 악기를 집행부의 허가 하에 동아리 방에 비치할 수 있다.

② 동아리 방에 비치하도록 허가된 회원 개인의 악기 등 기자재는 동아리 기자재와 같은 보호를 받는다.

**제22조 [회원의 집행부 탄핵권]**

① 회원은 정기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전체 또는 일부를 탄핵할 수 있다.

② 집행부 전체 및 일부 탄핵 조건은 동아리 총원 1/3 이상의 정기총회 참석, 해당 총회참석

인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부 전체가 탄핵 되면 집행부의 권한은 정지되며 그 총회에서 임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3조 [임시위원회]**

본 임시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정식 총회에서 집행부의 전체 탄핵이 가결될 경우 즉발한다.

① 임시위원회는 임시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시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은 회칙에 명시된 집행부의 권한과 임무를 따른다.

③ 임시위원회는 차기 집행부를 선발할 권한을 가지며, 차기 집행부에 대한 업무를 인계한다.

④ 임시위원회는 차기 집행부가 선발되어 모든 인계가 끝날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4장 동아리 행사**

**제24조[동아리 행사]**

다음 각 호의 행사는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1.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

2. 학기초 개강총회

3. 학기말 종강총회

4. 연 1회 홈커밍데이

**제25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② 정기총회는 개강 총회와 종강 총회로 구성된다.

③ 총회는 집행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이에 본 동아리 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④ 총회에 회부될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두메에 소속된 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개강총회]**

① 개강 총회는 동아리 회원에게 동아리의 연혁과 활동내용 보고를 중점으로 한다.

**제27조 [종강총회]**

① 종강 총회는 동아리 회원에게 학기회계결산과 활동내용 보고를 중점으로 한다.

**제28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의 개최는 동아리 회원의 1/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총회의 내용과 일시 및 장소를 총회 72시간 전까지 동아리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그 장소를 특정하여 진행하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사전에 서면으로 불참 사유와 개인 의견을 작성하여 집행부 또는 총회 참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는 위임 받은 자가 총회에서 낭독하며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1표로 간주한다.

③ 의사 결정 방식은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통과한다.

④ 제명의 경우 재적수의 2/3이상 찬성하여야 통과한다.

⑤ 같은 사안으로는 한 학기 동안 한 번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총회 참석자는 기권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기권 수가 재적수의 과반수가 되면 그 총회는 무효로 한다.

**제29조[정기공연]**

① 세부사항에 대하여 본 동아리 회원은 해당년도 집행부의 기획에 따른다.

**제30조[홈커밍데이]**

① 세부사항은 집행부와 OB들이 상의하여 정한 후 회원에게 공지한다.

-------------------------------------------------------------------------------------------------------------

**제 5장 부칙**

제1조 [개정안 시행일] 각 개정안의 개정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초판 [ 2016 ]
* 개정 1판 [ 2019 / 6 / 10 ]
* 개정 2판 [ 2019 / 12 / 02 ]
* 개정 3판 [2020 / 3 / 14]

